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 11.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입법예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의 범위 축소 (일반 상거래기업의 제외)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기업 또한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법의 규제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일반 상거래기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서는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자를 1) 금융기관, 2) 신용정보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수탁처리자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거래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정보법은 그 적용대상 당사자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용정보’ 및 ‘처리’ 개념의 재정립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개념에는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련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로 규정함으로써(입법예고안 제2조 제1호),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관련 정보로 한정하되, 식별정보 자체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모든 금융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처리'란 i)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ii)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iii)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3호).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과 상이하여 양 법률 간의 통일적 해석을 해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은 '처리'를 '수집, 조사,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입법예고안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법예고안은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입법예고안 제5조 제1항), 그 동의는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시마다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수집 또는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확성 등의 유지를 위한 것일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2항).

또한 신용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받도록 함으로써(입법예고안 제11조 제2항),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신용정보처리자는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입법예고안 제28조),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입법예고안 제22조), 신용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입법예고안 제33조, 제34조), 신용정보주체의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4.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법예고안은 신용정보처리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신용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국외 제공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의 추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입법예고안 제9조), 신용정보의 국외 이전 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 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암호화하여 위탁하여야 하고(입법예고안 제12조), 2) 금융거래 종료 시 거래 중인 다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최대 5년) 경과 후 삭제하여야 하는 등(입법예고안 제18조)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5.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예고안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변화된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큰 폭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바, 동법의 주된 수범

대상인 금융회사는 이러한 개정내용에 맞추어 기존의 업무 현황 및 향후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개발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28 | E-Mail. tsjeo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